

제26차 국제공증인대회 참관보고서

박 광 빈

대한공증인협회 국제이사

I. 들어가며

국제공증인 협회(U.I.N.L.: The International Union of Notaries)가 주관하는 제26차 국제공증인대회가 2010년 10월 3일(일)~10월 6일(수)까지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개최되었다. 국제공증인대회는 1948년 제1차 대회가 개최된 후 통상 3년마다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포함한 5개국이 새로운 회원이 되었다. 새롭게 가입된 나라는 2009년 총회에서 가입이 승인된 Mauritius, 2010년 총회에서 가입이 승인된 Mauritania, Tunisia, Bosnia & Herzegovina, 대한민국이었다. 이로써 국제공증인협회의 전체 회원국은 81개국이 되었다. 마라케쉬는 아프리카대륙 서북부에 위치한 모로코의 한 도시로서 특히 유럽인들에게는 관광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도시는 국제회의가 많이 열리는 도시이고 특히 1994년 4월 15일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결과로 채택된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송정호 대한공증인협회장이 제26차 국제공증인대회 개막식에서 회원국 가입행사로 이뤄진 국기 게양식을 한 후, 아르헨티나의 Galliano 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협정이 체결(1995년 1월 1일 발효)된 장소로 우리에게도 친근하게 알려진 곳이다. 이 장소에서 대한민국이 국제공증인협회의 회원이 된 것은 국제사회에 동참하여야 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일로서 뜻 깊은 일이고 그 동안의 숙원을 이룬 쾌거라 할 것이다.

국제공증인협회는 한국의 회원가입신청에 대하여 오랫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집행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2가지 사항, 즉 “한국 공증인법상 공증인의 임기가 5년이고 이를 재임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구 공증인법 제15조)” 및 “대한공증협회 설립의 임의성 (구 공증인법 제77조의 2)” 문제가 주된 장애 사항이었다. 2008년 임기제 문제는 가입심사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국제공증인협회의 방향이 정리되었고, 2009년 임의단체 문제는 공증인법이 개정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 가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다.

아래에서는 국제공증인협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가입에 이르기까지의 주요경위 및 이번 제 26차 국제공증인대회의 행사내용을 차례로 설명한다.

II. 국제공증인협회의 개요

1. 국제공증인협회의 창립

국제공증인협회(Union Internationale Notariat Latin : U.I.N.L / 영어식 표기는 International Union of Notaries) 는 1948년 19개국(아르헨티나,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칠레, 에쿠아도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스위스, 우루과이)의 공증협회 대표자들에 의하여 창립되었다. 1948년 10월 2일 헌장의 형태로 승인된 원래의 정관은 1950년 10월 2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국제공증인협회는 전 세계 공증인들 상호간에 공증업무를 촉진, 조정, 발전시키고 각 국의 공증인협회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개인과 법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필요한 공증인의 지위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성격의 비정부기구(NGO)이다.

2. 국제공증인협회의 설립목적

- ① 라틴계 공증인제도의 근본원칙 및 공증인협회 회원들의 총회에서 승인된 공증인 윤리원칙의 촉진 및 적용
- ② 국제기구들에 대하여 공증인 직역을 대표
- ③ 국제기구들의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참여
- ④ 각국의 공증협회 등 국가기구와의 협력
- ⑤ 라틴계 공증인의 근본원칙에 입각하여 개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공증제도의 시행과 협력에 관한 법률의 연구
- ⑥ 공증인에 관련된 법령의 연구 및 체계적인 수집
- ⑦ 국제적 회의 촉진 및 개별국가만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전문가적 회합의 지원
- ⑧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의 관계정립
 - a. 공증인협회를 개선중인 국가나 공증인협회가 아직 없는 국가들을 상대로 그 개선 및 구성을 지원하여 국제공증인협회에 가입시키는 것
 - b. 공증인제도에 접목될 수 있는 법제도를 가진 국가의 공증기구들과 관계수립
 - c. 각국의 법의 발전에 공헌

3. 국제공증인협회의 활동분야

국제공증인협회는 여러 가지 분야의 활동을 통하여 공증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 간의 특별한 능력있는 대화중개자로서의 명성을 쌓아왔다. 공증인제도의 근본원칙에 입각한 정신에 기초하여 각국 공증인협회, 각국 의회, 국제적 및 초국가적 기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가. 국제기구

- ①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는 UINL에 특별부문 자문적 지위(special category consultative status)를 수여하고 있다.
- ② 유엔헌장 제71조 및 유엔결의안 1996/31호에 규정된 이 지위는 국가들, 유엔사무국,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각 전문기구들에 대한 기술적 전문가, 조언자, 자문인으로서 유엔이 실행중인 프로그램과 목표에 공헌할 수 있는 자격을 허용받고 있다.

- ③ WTO와 관련하여 국제공증인협회가 영향을 받는 범위 내에 있는 각종활동에 대하여 참여하고 있다.

나. 국제정부간기구(IGO :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유럽위원회, 국제사법통일협회(UNIDROIT), 국제사법에 대한 헤이그 회의 등

다. 초국가적, 지역적 기구

유럽연합, 유럽의회, 유럽위원회, 유럽공동체 재판소, 미주기구, 국제해양협회,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연안 경제위원회, 북미자유무역기구 등

라. 각종 국제 비정부기구(NGO)

국제법률가협회, 국제판사협회, 국제법협회, 국제변호사협회(IBA)

4. 회원국(총 81개국)

국제공증인협회의 각 회원들은 개별적인 각국위원회 혹은 동일한 개별국가기구 또는 지역적 혹은 주단위의 협회지부나 조직을 대표한다. 각 국가는 한 표의 투표권만 있다.

가. 유럽(36개국)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니아 앤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조지아,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런던(U.K.),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타, 몰다비아, 모나코,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스페인, 터키, 바티칸.

나. 아메리카(23개국)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에쿠아도르, 구아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우루과이, 루이지애나(U.S.A.), 베네주엘라.

다. 아프리카(18개국)

알제리, 베닝, 부르키나 파소, 카메룬, 중앙 아프리카, 차드, 콩고, 가봉, 기니, 아이보리코스트, 말리, 모리타니아, 모리셔스, 모로코, 니제르, 세네갈, 토고, 튀니지아.

라. 아시아(4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Ⅲ. 국제공증인협회 가입에 이르기까지의 주요경위

1. 회원 가입 추진 배경

우리 사회 전 부분이 국제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국제공증인협회에 가입할 경우 우리 나라 공증인의 위상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공증업무의 내실화, 업무확대, 국제적 공증제도의 상호 인정 등에서 상당한 기여가 예상되고, 또한 우리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공증제도의 연원이 바로 라틴계 공증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공증제도의 발전 및 연구를 위하여서도 UINL 회원국들과의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하고, 특히 우리와 인접한 중국, 일본이 이미 가입하고 있어 이들 나라들과의 긴밀한 교류를 한층 더 도모할 목적으로 2005년부터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이다.

2. 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회의 주요활동 일지

- ① 2000. 4. 1. : 일본공증인연합회 특별회의(UINL측도 참석)에 이재성 협회장 등 참석하여 한국 공증제도에 대한 강연 실시

- ② 2000. 10. 4.~6. : 국제공증인협회 산하 국제협력위원회 방한하여 한국공증제도 설명 들음
- ③ 2003. 1. 15.~18. :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UINL과 중국공증인협회 공동 주최(상해 공증인협회 주관, 중국 법무부 후원) 국제공증인 심포지엄 참가
- ④ 2003. 10. 8.~11. : 캐나다 퀘벡시에서 개최된 UINL 2003년도 회의에 한국 대표하여 옵서버 참가
- ⑤ 2004. 10. 17.~22. :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2004년도 제24차 UINL 국제공증인대회에 옵서버 참가
- ⑥ 2005. 5. 28.~ 6. 3. : UINL 및 미국공증협회 주관으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전자공증에 관한 국제포럼” 참석
- ⑦ 2005. 7. 11. : 2005년도 대한공증협회 정기총회에서 UINL 회원 가입을 회원 만장일치로 승인함. 회원 가입에 필요한 실무사항 집행부에 위임
- ⑧ 2005. 10. 18. : UINL 측에 협회 회원가입 신청공문 및 한국 공증인법과 공증인법 시행령 발송
- ⑨ 2005. 10. 31. : UINL 측에서 2005년도 회의 참석 요청 및 한국의 회원가입과 관련되어 한국 공증제도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요청한 데 대한 설명자료 발송
- ⑩ 2005. 11. 5.~9. :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UINL 상임이사회 및 유럽 공증인협회 연금제도 세미나에 참석하여, 한국의 공증제도 설명과 더불어 회원 가입 실무자와 협의
- ⑪ 2007. 4. 19.~21. : 일본공증인연합회를 방문하고 일본공증인연합회 운영방향, 일본내 공증제도 현황, 선서인증·전자공증 등 선진 공증제도 운영, 공증주간 행사 등 공증 홍보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세미나 등을 개최함과 더불어 Hongo Takeyoshi UINL 상임이사 등과 만나 한국의 UINL 회원 가입이 조속한 시일에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
- ⑫ 2007. 5. 22. : UINL Giancarlo Laurini 회장과 아시아지역 Sadayuki Funabashi 부회장에게 한국의 UINL 회원 가입이 어느 정도 논의되고 있는지와 함께 회원가입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CCNI 담당자를 한국에 초청한다는 서한 발송
- ⑬ 2007. 8. 26. : CCNI의 Jeffrey Talpis 교수 겸 위원이 한국 공증제도에 대한 보고서를 UINL에 제출

- ⑭ 2007. 8. 30. : UINL Giancarlo Laurini 회장으로 부터 제25차 국제공증인대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받음
- ⑮ 2007. 9. 6. : UINL 제25차 국제공증인대회 사무국에 한국의 회의 참가통보
- ⑯ 2007. 9. 7. : 아시아지역 Sadayuki Funabashi 부회장 및 Hongo Takeyoshi UINL 상임이사에게 제25차 국제공증인대회에서 한국의 회원가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 ⑰ 2007. 10. 3.~6. :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UINL 제25차 국제공증인대회에 조희중 협회장 등이 참석하여 아시아 지역 Sadayuki Funabashi 부회장 및 J.P.Decorps CCNI 위원장 등과 만나 한국의 회원가입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한국의 공증인들의 임기제 및 협회의 임의단체성 문제로 가입승인 보류
- ⑱ 2007. 10. 29. : J.P.Decorps CCNI 위원장 및 한국 보고서를 작성한 Jeffrey Talpis 교수(공증인)에게 한국의 제도 개선진행사항 등에 대한 서한 발송
- ⑲ 2008. 10. 6. : 한국의 회원가입과 관련된 두 가지 전제조건 중 공증인의 임기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내용과 함께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J.P.Decorps CCNI 위원장 서한 접수
- ⑳ 2009. 2. 2. : J.P.Decorps CCNI 위원장에게 한국의 개정 공증인법 등에 대한 내용설명과 아울러 1/4분기 중 한국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한다는 서한 발송
- ㉑ 2009. 9. 8. : J.P.Decorps CCNI 위원장 및 CCNI 위원들의 회원국 가입 심사를 위한 한국 방문 일정 통보
- ㉒ 2009. 9. 11. : J.P.Decorps CCNI 위원장 등 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는 답신 서한 발송
- ㉓ 2009. 10. 17.~23. : J.P.Decorps CCNI 위원장 등 대표단 일행 한국 방문 및 한국회원 가입 실사 진행 /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처장), 대한변협(회장) 등 방문
- ㉔ 2009. 12. 22. : J.P.Decorps CCNI 위원장으로부터 한국의 원활한 회원국 가입 진행을 위하여 한국 공증인법 중 일부 개정의 필요를 권고 요청하는 서한 접수
- ㉕ 2010. 4. 13. : J.P.Decorps CCNI 위원장에게 공증인법 개정 권고 사항 중 상당부분은 공증인법의 불어 번역과정상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부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개정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서한을 전달
- ㉖ 2010. 4. 15. : J.P.Decorps CCNI 위원장으로부터 국제공증인협회 회원국 가입을위

한 마지막 단계로 5월말까지 대한공증인협회 차원의 ‘공증인윤리강령’을 채택하여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

㉓ 2010. 9. 17. : UINL에 상임이사회 의결 대한공증인협회 윤리강령 (가안)영문 번역본 송부

㉔ 2010. 10. 1. : UINL 총회에서 한국 등 4개국 회원 가입 결정

㉕ 2010. 10. 3. : UINL 제26차 국제공증인대회에서 한국 회원국 가입 행사 진행

IV. 국제공증인대회 제26차 회의내용

1. 회의장소

만수르 에다비 호텔

2. 회의 일정

① 10월 3일 : 개막식에서는 UINL 회장을 비롯한 여러 단체장들의 인사말이 있었고, 가입승인이 난 5개국의 대표단들의 국기 전달식이 있었다.

송정호 협회장은 대한민국 국기를 UINL 갈리아노 회장에게 전달하였다.

② 10월 4일 : 첫째 주제인 “사회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공증인과 국가간의 협력: 금융시장의 투명성, 자금세탁, 도시화 및 환경”에 관한 주제발표와 각국의 토론이 이어졌다.

③ 10월 5일 : 둘째 주제인 “투자 보장관련 공증행위의 이용 특히, 등기부대장에 관한 공증행위의 신뢰성과 집행효력”에 관한 주제 발표와 각국의 토론이 이어졌다.

④ 10월 6일 : 폐막식에서는 24대 회장으로 선임된 장 폴 드꼬르 신임 회장(프랑스)의 인사말과 새 임원진 소개 및 차기 제27차 세계공증인 대회의 개최국인 페루 공증인협회장의 인사와 페루를 소개하는 인상적인 영화가 상영되었다.

3. 토의주제 주요 내용(발제)

가. 첫째 주제인 “사회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공증인과 국가간의 협력

- 금융시장의 투명성, 자금세탁, 도시화 및 환경”에 관하여

(1) 베르나르도 페레스 델 카스틸로(멕시코)의 발표

자금세탁으로 인한 도덕적 위기는 물론 경제위기, 금융위기, 도시화 및 환경적 위기를 고려하여 국가 및 사회와 협력하여 경제적인 관점에서 공증인의 중재의 효용성과 장점을 철저히 반영하기 위한 주제 선택이다. 발전을 거듭하고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UINL의 회원국 중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와 같은 위기를 겪었다. 1984년 플로렌스 회의에서 우리가 주장한 것처럼 공증인은 “현재와 미래의” 직업이다. 당시 플로렌스 회의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한 바 있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권국가는 공증 업무를 공증인에게 위임한다. 위임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법적 확실성을 보증하는 것, 즉 시민들에게 “무엇을 준수할 지를 아는” 확실성을 보증하는 것이다.

공증인의 일상적인 업무는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해석하고 조언하며, 관련 서류의 준비, 작성, 증명, 위임, 보관 및 재생을 포함한다.

공증인은 자신의 활동에 관한 다양한 단계에서 법적 확실성을 보증한다. 공증인은 적법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진실성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하며, 자신이 보고 듣는 것을 기재하는 진술서에 진실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증인은 공평하여야 하며 다른 당사자에 반한 채 일방당사자만을 위하여 행동할 수 없다. 공증인은 비밀준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증인은 고객이 제안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답변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문적, 법적, 체계적인 수준을 항상 업데이트할 의무가 있다.

(2) 후안 이그나시오 고메자 비야(스페인)의 금융시장의 투명성에 관한 발표

2007년 중반에 발생하여 2008년 부동산 및 금융 분야의 붕괴로 이어진 세계 경제 위기는 공증 분야에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 2009년 6월 런던 상임위원회(Permanent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유럽공동체(Union for Europe) 의장은 공증 업무의 수행에 대한 현재의 세계 경제 위기의 분명한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강조하였다.

“유럽공증인회원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은행 및 보험회사의 국유화, 창업 감소로 인한 일자리 감소, 폐업 및 청산, 실업률 증가, 소비 격감, 대출 신청 감소, 대출 요건 강화, 특히 부동산 구입용 대출 요건 강화, 아파트 가격 급락과 그에 이은 경기 둔화”

경제 위기 및 그 원인, 영향 및 국가와 공증인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는 UINL 내에서 최우선 순위이며 본 2008년~2010년 입법 활동 중 지속적으로 고려한 주제이다.

이 논의는 관리 경제 대 자본주의 경제간의 끝없는 논쟁에 관한 것이 아니다. 시장은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 계획 경제를 거부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 논의는 대륙법과 영미법간의 비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논의는 규제 대 비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제 및 생산 모델에 대한 반영은 물론 경제 관련 또는 순수하게 투기 관련 사항을 무시하는 법적 논쟁은 무엇보다도 규제의 부재, 규제 부재로 인한 금융 브로커의 투명성 및 시장의 투명성 부재, 독립적이어야 하는 단체들(신용평가기관 및 모기지 거래기관)의 독립성 부재, 크루그먼의 말을 인용하면 1932년의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혼란으로 이어진 실물경제 내의 금융상품의 도입상의 부도덕 및 기능 이상으로 인한 금융경제의 과잉으로 인한 점이 크다.

2009년 6월 런던 UINL 위원회에 제출된 자유화-규제에 관한 보고서에서, 램버트 의장과 차푸이스 의장은 규제 경제의 필요성과 이러한 경제적 법적 영역에서 공증인의 핵심 역할을 강조하였다.

“규제권한은 공적인 중재의 형태가 아닌 경쟁을 예상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시장의 자기규제를 이상으로 삼고 계약을 교환과 단체의 법적 구조로 장려하는 것이다. 규제 권한은 자유주의와 규제간의 중간 지점에 속한다. 그래서 규제 권한은 매우 자주 혼동된다. 규제는 경쟁과 독점의 개념, 자유와 안보의 개념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균형은 결점이 드러난 규제 국가(All State)와 과도함이 드러난 ‘비규제 국가’(No State) 간의 제3의 방법이다. 이러한 법률적 보안이 투자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공증인들은 법률적 보안의 보증 및 그에 따른 경제 발전의 보증이 되는 이러한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한다.”

법률적 보안 및 경제 발전에 관하여 2009년 5월 11일, 12일에 열린 세계은행 주최 워싱턴 회의 발표 중, 프랑스대륙법협회의 들로르(Delors) 의장은 시장의 자기규제 및 과

도한 자유와 경쟁의 영향은 해로운 것으로 증명되었다며 규제 및 균형을 갖춘 시장경제를 촉구하였다.

2009년 5월 금융위기 및 유로에 관한 빌바오회의 중, 오토마 이싱(Otmar Issing) 교수는 금융 위기의 원인 중 하나는 신용평가기관들의 독립성 부재임을 인정하며 은행 자산에 대한 투명성 및 정보가 부재함을 언급하였으며(오토마 이싱 교수는 은행 모기지로 인한 손해가 어떠한 지에 대하여 우리는 여전히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함), 국제적인 수준에서 다음 두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질서를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고 말하였다.

① 규제

② 감독

즉, 규제와 감독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자기규제로 인한 과도함을 방지하는 새로운 세계 금융질서의 축이다. 금융 시장의 규제 및 감독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면 감독 및 관련 사항을 누가 담당할 지를 정하여야 한다. 즉, 누가 감독을 하며 무엇을 감독하여야 하는지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증인들은 이러한 새로운 질서에 관여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이어야 한다. 공증인들이 무엇을 감독할 것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향후 공증 업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장의 규제 및 감독이 금융시장에 대한 사회의 새로운 도전에서 중요한 기준이라면, 공증인은 현실에 있어야 하며 그 특성으로 인한 새로운 질서 속에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여야 한다. 모기지 및 기타 금융 시장 상품이라 명명되어 그러한 상품으로 기능하는 담보를 받는 과정에서 합법성, 공평함, 독립 및 대륙법 국가에서 필요한 중재를 확인하는 것은 공증인을 금융 경제의 적법하고 경제적인 문서의 작성을 위하여 실물 경제의 중요한 대리인으로 변모시켜, 다른 사항도 새로운 규제에 의하여 공증인의 덕분인 경우 그러한 사항도 담당할 수 있다.

국가를 대리하여 공증 권한을 위임 받는 요건과 관련한 이러한 요건은 국가로 하여금 공증인이 중재하는 사항에 있어서 금융자산을 창조하고 순환시키는 과정을 철저히 그리고 즉시 확인 및 감독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본 하위 주제를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①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상에서 공증인의 기능 및 이를 규제당국, 국가, 금융시장

및 사회에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공증인이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상에서 자신의 업무 활동을 국가에 제공하거나

제공 가능한 분야를 규명할 것

- ③ 주식, 유가증권, 채권 및 기타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 증서를 발행하는 것은 물론 모기지 및 기타 부동산 권리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공증인에 의한 중재의 중요성
- ④ 공증인이 중재하는 활동 및 과정에 대한 독립적이고 법적인 통제의 기능
- ⑤ 궁극적으로 규제 및 감독을 받는 시장에 대하여 새로운 세계 금융 질서상의 한 축으로 공증인의 역할을 강조할 것

(3) 체사레 리시니 (이탈리아)의 금융시장의 자금세탁에 관한 발표

- UNIL 회원국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현행 규칙에 대한 설문조사

[배경]

자금세탁은 범죄수익의 불법원천을 가장하기 위한 과정으로, 모든 불법적인 흔적을 파기한 후에, 불법으로 취득한 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양한 수법을 취하는 것이다. 자금세탁을 위하여, 자금 세탁자는 범죄 수익으로 이루어진 자산을 수 차례 다른 자금으로 대체하며, 자금의 출처를 은폐할 수 있을 때까지 다른 자금으로 전환한다(자금세탁 사이클). 자금세탁은 여러 차례의 탈바꿈(전환) 후에, 카지노, 보석상 또는 초기 단계에서는 밀수업자와 장물구매자와 같이 비교적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이용할 뿐 아니라 정통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수 차례의 치환과 조합(은폐, 거래, ‘분할예치’)의 방법으로 자금을 분할함으로써 세탁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걸로 시작된다(예치). 자금세탁의 목표는 세탁 자금을 합법적인 경제에 통합시키고(통합), “자금세탁”을 통해서 일련의 증거 문서의 흔적을 은폐하는 것이다(강한 세탁).

테러자금의 조달 과정(‘자금오염’)은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한 ‘범죄수익이 아닌 테러의 지지자와 동조자가 기부한 기부금’ 출처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그 과정이 자금세탁과는 반대가 된다. 이러한 테러자금의 조달은 수집자(‘수집’)가 자금 이동의 최종 목표를 은폐하기 위해서 하월라 시스템과 같은 지하금융시스템 또는 유사금융시스템 이용하여 자금을 전송하고 가장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결국, 이러한 방

법으로 조달된 자금 또는 기타 자산은 테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 된다.

현행법들은 국제적인 맥락에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법들은 특정 원칙과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특수한 국가기관, EU 및 국제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이는 자금세탁방지체계에 신규 가입한 가입국들은 확약한 의무를 충실히 그리고 그 한계를 이해하며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해당체계의 성격과 요건들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방지시스템체계는 현재 본래의 금융시스템에서 기타 여러 가지 전문활동으로 확대되어서 범죄수익인 부정한 자금 또는 테러자금 지원에 사용된 오염된 자금의 세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문가에는 고객의 신분과 그러한 부정한 행위에 대한 기록과 보고와 관련하여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및 재무 상담사 등이 포함된다.

① 귀국의 법체계에는 범죄수익을 세탁하고 테러자금 조달에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존재합니까?

② 이러한 법은 국내법입니까 아니면, 초국가적법입니까 (예를 들어, EU와 같은 조직의 회원자격으로 인한)?

③ 이러한 법은 정치적 주요인물(PEPs)⁵ 관련 사안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④ 현행 법에서 직업상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의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까?

a. 고객을 밝혀야 할 의무

b.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자금을 보고해야 할 의무

c. 자금 사용에 대한 제한 위반을 보고해야 할 의무

d.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의무

f. 사업관계의 범위 및 성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해야 할 의무

g. 전체 거래 관계 중 해당 거래가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고객, 사업활동, 위험프로파일에 대한 정보와 양립되도록 사업관계 동안 이행된 거래관계를 조사해야 할 의무, 필요한 경우, 자금의 출처를 고려해야 하며,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할 의무

⑤ 위험의 정도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가 다른 법규가 존재가 있습니까 (즉, “위험에 비례하여”)?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3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위험의 인지 정도

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

- a. 표준 채무불이행 수준 (“통상적인” 주의의무),
- b. 간략한 고객주의의무
- c. 강화된 고객주의의무
 - i) 공개 금지
 - ii) 기록 보존 및 통계자료

⑥ EU 회원국의 현행 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의도적으로 발생한 경우, ‘자금세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a. 범죄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의 가담의 대가로 알려진 자산을 자산의 불법원천을 은폐 또는 가장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 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법적 조치를 회피하는 것을 도울 목적으로 전환 또는 양도;
 - b. 범죄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의 가담의 대가로 얻은 자산임을 알고 있는 자산의 성격, 원천, 양도, 이동, 소유권 또는 수익적 소유권의 은폐 또는 가장;
 - c. 수령 당시에 해당 자산이 범죄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에 가담한 대가임을 알게 된 자산의 매입, 보유 또는 사용;
 - d. 위에 언급된 행위 중 하나에 가담, 그러한 행위의 모의, 실행 시도, 지원, 다른 사람이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선동, 조언 또는 조장 “테러자금 조달”의 경우, 여하한 방법으로 테러행위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자금을 제공 또는 모집
- 상기 2번과 4번에 언급된 행위를 구성하는 요소인지, 의도 또는 목적은 객관적인 사실적 상황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법체계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경우들이 이러한 정의에 부합합니까? 부합되지 않다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⑦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다음 당사자 중, 귀하의 법체계에 포함되는 범주와 포함되지 않은 범주는 무엇입니까?

- 가) 신용기관;
- 나) 금융기관;
- 다) 전문 활동을 하는 회사 또는 개인:
 - a. 감사, 외부 회계사 및 세무고문;
 - b. 공증인 및 기타 법률 전문가,

- i) 부동산 또는 회사의 매매;
 - ii) 금전, 금융상품 또는 기타 고객자산의 관리;
 - iii) 은행계좌, 예금계좌 또는 증권계좌의 개설 또는 관리;
 - iv) 회사의 설립, 운영 또는 관리에 필요한 출자금 조성;
 - v) 신탁, 회사 또는 유사한 구조의 구성, 운영 또는 관리;
 - c. 상기 a와 b에 언급된 사항 이외에 회사 또는 신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
 - d. 부동산 중개인;
 - e. 거래가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5,000유로에 상응하는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한해, 자산을 양도하는 기타 개인 또는 회사;
 - f. 도박장.
- ⑧ 해당 전문가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지원 활동이 진행 중이거나 또는 과거에 이루어졌거나 또는 시도된 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거나, 또는 의심하거나 또는 그렇게 의심할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러한 혐의에 대하여 공식 당국(UIF)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와 같은 보고 의무가 특별히 존재합니까?
- ⑨ 용의 당사자의 경제능력과 사업활동을 고려하고, 해당 전문가의 활동을 통해 또는 임명으로 인해 취득하는 요인들을 토대로 하여 부정행위자가 하는 활동의 결과로 알려진 부정행위의 성격, 규모 또는 기타 상황으로 인하여 혐의를 둘 수 있습니까?
- ⑩ 정지위치 (static position) 검사와 같이 방지와 관련이 없는 상황에 반대되는, 중요한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즉 '부정행위'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춘 방지와 억제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제3차 자금세탁방지지침에 따라 민감한 행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가) 부정행위이행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 의무대상
 - 나) 법적 특권 및 비밀보장 대상인 전문적인 서비스:
 - a. 법원에서 변론 역할을 하는 법적 특권의 대상인 것과 같이 면제영역이므로, 법적 지위의 평가, 행위의 계획/실행이 아닌 상황의 이해 자체가 의무사항은 아님.

b. 법정에서의 변호와 진술에 필수적임 = 의무사항은 아님.

⑪ 귀하의 법체계에서는 ‘고객알기제도’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⑫ 귀하의 법체계에서는 부정행위 또는 재산의 최종수익자이며, 수익적 소유자인 개인의 주관적인 실체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수익적 소유자’라는 용어를 소개하고 있는 GAFI (파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d' action financière sur le blanchiment de capitaux (영문, FATF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www.fatf-gafi.org])는 법률, 금융 및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불법적 자금세탁 및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제적 정부간 조직임)는 상부에 있으며, 고객을 소유 또는 통제하고 또는 거래를 대행시키는 사람 등의 개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는 회사 또는 법적으로 구성된 법인에 대한 최종 통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Rec. 11, 15 to 18). 결합 지침 2005/60/CE 와 2006/70/CE는 최종 소유자를 소유자로 보이는 개인의 권리의 ‘전 이성’의 조건을 구성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리를 이용하여 계약관리의 이익을 취하고 또는 그러한 이익을 통제하는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⑬ 그러한 조건을 수락하기 위해서 전문가는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⑭ 해당 전문가는 자기 자신을 명부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제한할 수 있거나 또는 제한해야 합니까?

⑮ 해당 전문가는 위험의 심각성에 따라, 수익적 소유자를 밝히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의 적합성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⑯ 해당 전문가는 다음 대안들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까?

a.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공자문을 위한 공개 명부, 목록 또는 문서에 의존;

b. 고객에게 관련자료 요청;

c. 기타 다른 방법으로 정보 취득;

⑰ 고객이 회사인 경우, 소유권 및 통제 구조를 알 경우, 수익적 소유자를 알아야 하는 의무는 충족된 것입니까?

⑱ 소유권 구조를 알고 고객의 회사를 감독한다는 것이 전문가가 법인의 정관을 읽는 것을 넘어서 회사구조를 조사 및 이에 관하여 결론을 도출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①9 공공기록 조사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전문가가 확인절차를 수행한 이후에도, 해당 인이 수익적 소유자라는 확정적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 ②0 이러한 경우에, 공증인은 해당 사건을 거절해야 합니까?
- ②1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및 비례적으로 이행할 의무를 가지는 행위를 제한하는 원칙이 존재합니까?
- ②2 의무의 대상이 되는 전문가가 다음과 관련한 리스크에 대하여 고객들을 적절하게 감독하고 있습니까?
 - a. 고객의 타입,
 - b. 사업관계,
 - c. 문제의 제품 또는 거래
- ②3 다음의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a. 고객의 신원증명 및 신분 확인;
 - b. 수익적 소유자의 신원증명 및 전문가가 승인하는 신분확인 방법(적절하고 리스크에 비례함)을 채택
- ②4 적절한 신원증명 및 신분확인이 끝날 때까지 예상되는 부정행위의 수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합니까?
- ②5 문제의 행위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본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의무적인 것인지요?
- ②6 문제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문서를 수령하고 즉시 UIF에 통지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②7 UIF가 본 행위가 이행되지 못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까?
- ②8 특정 사법 시스템 (예를 들어 EU)내 전문가들의 모든 의무사항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전문가의 기밀약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공증인 또는 세무사는 그에게 온 고객과 신성한 기밀관계를 유지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전문가는 기밀유지를 요하는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법률에 의하여 규율이 되는 사회에서 늘 재량에 따라 보호가 되는 관계인 고객과의 관계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 ②9 자금세탁 금지 정책을 통하여 추구되는 가치보다 전문가의 기밀유지가 더욱 상

위의 가치를 대변한다는 생각은 북미의 모델로서, 해당 모델에서는 전문가의 기밀유지는, 기밀유지 및 변호인-고객 면책특권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 ③ 하지만 이제, 전문가의 기밀유지는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는 개인의 이익과 같이, 상이한 중요성을 가지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익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이하게 충돌하는 법적 이익을 비교하였을 때, 공공의 이익이 존재할 시, 더 낮은 중요성을 가지는 이익을 보호하는 개인의 비밀유지를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사법시스템은 어떠한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 ④ 전문가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까?
 ⑤ 본 처벌은 형법에 따르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행정처분(벌금)에 따르는 것인가요?

(4) 도미니크 사브레(프랑스)의 도시화 및 환경에 관한 발표

전 세계 및 좀 더 정확하게 각 국가는 다음과 관련한 이슈에 직면하고 있다.:

- ① 환경: 지구온난화, 주요 에너지 및 원료 고갈, 천연자본의 파괴
 (토양오염, 삼림파괴, 담수 부족)

- ② 도시화: 인구증가, 인구밀집, 거주지 빌딩 밀집, 재산청구

지속가능개발 및 도시화 규제 개념들은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개념들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있다. 따라서, 도시 스프롤 현상을 제한하는 것은 집단 난방, 자동차 의존도 감소, 농지 보존으로 인한 에너지 보존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미션은 이를 헌법에 포함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우선과제가 되었다. 우리는 이것이 해당 국가들이 개혁 절차를 시작해야 하고, 이를 집행해야 하며, 이들이 진화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할 필요가 있다. 규제기관 및 자문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증 기관 및 공증인의 개입은 지속가능 개발 및 도시화 정책 규제 이행에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가) 공증인은 지속가능한 개발 및 도시화 규제 이행의 행위자이다.

a.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개발에 참여

i) 미국에서 공증기관의 인적 및 금융 수단 제공

(상임운영위원회, 연간의회) = 금융 및 인적 투자

ii) 지역 기관의 자문 및 중개인으로서의 공증인: 지리학적 네트워크 및 지역에 대한 지식은 공증인을 도시화 규정 이행에 있어 해당 지역내의 특별한 행위자로 활동하게 한다. (개발 구역 생성을 위한 조언), 신규 집합시설의 조직 (처리 공장, 산업설비)

iii) 미국의 경제적 및 금융의 소득 제시.

b. 지속가능개발 및 도시화 규제 정책의 이행을 위한 주요 전제조건

i)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개인의 투자는 그들의 재산권이 확실히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ii) 도시 개발, 토지 집중도 및 천연자원의 관리는 재산권 및 재산권 전반에 관한 완전한 지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iii) 해당 지역 내 모든 행위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설명

나) 지속가능개발 및 도시화 규제 정책의 이행을 위한 신뢰할 만한 제3의 당사자인 공증인

a. 규제담당자로서 공증인의 개입

i) 법률 지식 및 규제의 적절한 적용 우선순위 확인

(도시개발 분야의 지식, 재건과 같은 환경 규제 지식)

ii) 공증인은 국가 레벨에서 정보를 추적하는 중요한 행위자이다.

(특히 환경을 위한 장치, 수질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하여)

iii) 공증인이 미국 내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개입을 위한 주요 연결 수단임을 설명

b. 공증인은 당사자들에 대한 공정한 자문인이다.

i) 당사자들에 자문 및 신뢰를 지속시킬 의무

ii) 신뢰가 경제개발, 특별히 환경친화적인 신 기술 도입의 원동력임을 설명
환경 및 도시화에 관한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의 조화로운 개발입니다.

다) 사회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공증인의 지속적인 행위

a. 인증행위의 특징 : 안정성 및 집행은 사회 및 경제의 개발에 좋은 수단입니다.

b. 인증행위의 확실성은 신뢰를 촉진시킵니다.

c. 인증행위의 보관

나. 둘째 주제인 “투자 보장관련 공증행위의 이용 특히, 등기부대장에 관한 공증행위의 신뢰성과 집행효력”에 관하여

(1) 프랑코 살레르노 카르딜로의 발표

본 주제는 현재 매우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많은 논문들이 체계적인 엄격함을 가지고 작성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공증인들이 세계 외부의 컨설턴트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 본 작업은 공증인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전반적인 전 세계, 국내 및 국제 정치, 경제학자들, 법조인 중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과, 특히 종종 불충분하거나 잘못 해석된 정보에 근거한 연구, 보고서 및 선언을 통해서 본 기구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본 기구의 존재 유용성에 의구심을 던지고자 시도한 국제기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논의대상인 본 주제는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사회발전을 위한 도구로서의 공정증서’라는 제목으로 2007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의 첫 번째 주제와 같은 연속 선상에 있다고 간주될 수 있다. 다만, 본 회의는 공정증서가 공공 기록과 유효한 소유권의 신뢰성을 보장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보안과 관련한 공정증서의 중요성에 집중해야 한다.

공정증서가 투자를 연대 보증한다는 점은 우리와 같은 공증인에게 매우 명백해 보입니다만, 현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점을 설명하고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공증인의 행위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입증하고 낮은 수준의 법적 보장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본인은 우리가 부동산 및 회사와 가족문제와 관련되고 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공정증서의 세 가지 기본적 측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① 계약당사자들간의 보증 또한 특히, 법률시스템 내에서 특권적인(privileged) 증거로서의 공정증서;
- ② 등기부대장(Public Registers)과 관련한 신뢰성을 보장하는 공정증서;
- ③ 집행권원(executive title)으로서의 공정증서

위와 같은 세가지 측면은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에서뿐 아니라 한 국가의 전체 경제 및 법률 시스템의 관점에서 함께 결합되어 공정증서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신뢰성(dependability)의 관점에서, 공정증서는 한편으로는 단일 거래를 보장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거래비용을 인하하면서 일반적으로 투자개발 및 투자안정의 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첫 번째 측면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중요성을 강조해야만 한다.

- ① 업무의 적법성을 점검하여 법률에 의한 상소권(recourse)을 제한함;
- ② 공평한 컨설턴트의 역할;
- ③ 법원에 제출된 공적 문서에 부여된 특정 비중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 ④ 특정 권한을 위임 받은 공증인의 공적 기능

또한 영미권이 우리의 역할을 인정하는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예일 및 프린스턴의 Shiller 교수가 표명한 입장이 가장 흥미롭다. 그의 가장 최근 저서 '서브프라임 해결책'에서, 그는 계약서를 소리내어 읽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 금융업자들이 적절한 조언을 제공할 수 없는 우호적인(favourably-minded) 변호사들을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소개하는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평한 전문가 및 컨설턴트"로서 민법상 공증인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 측면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공적 문서가 등기부대장에 기재된 자료의 신뢰성을 보장함으로써 한 국가의 경제 및 법률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안전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지적해야만 한다. 모든 민법체계에서 등기부대장의 통제는 공증인, 사법당국이나 기타 공공관리에 배정된 국가적인 책임이다. 등기된 법률상의 지위를 설정하고 수정하는 것은 문서들이기 때문에, 등기부대장의 신뢰성은 그 안에 기재된 문서들의 신뢰성에 따른다. 이 점은 회사 거래 및 가족관계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분야에서도 적용된다. 또한, 이 점은 우리가 거래를 완료하고 공식적으로 등기하기 위하여 전자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최선의(up-front) 점검을 받지 않는다면, 한 국가의 법률 및 경제 시스템의 신뢰성에 커다란 위험을 제기할 수 있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기의 유포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훨씬 더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등기부대장의 신뢰성은 전반적인 세계에서 투자안전을 의미하고 경제활동의 증가를 촉진하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indisputable)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경제자원이 된다. 예를 들면, 부동산 분야에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구는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아프리카, 동아시아, 동유럽)에서 빈곤의 원인이 토지자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일정 방식으로 그 유효성을 보장하는 ‘토지대장’의 부재나 신뢰불가능성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보장은 해당 부동산이 대출의 담보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투자를 촉진한다.

세 번째 측면과 관련하여, 투자를 보호하는 공정증서의 중요성은 그의 집행효력을 말할 때 완벽하게 명확해진다. 위에서 말한 공정증서의 특징 중의 하나는 공정증서가 거래의 반박할 수 없는 증거 및 그로 인한 집행권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 Unibank라고 알려진 유럽재판소가 공정증서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판결(문서기록 C-260/97 of 17/06/1999)한 후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채를 유럽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EU 규정(규정 CE 805/2004)은 명시적으로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문서 중에 공적 또는 그 진정함이 증명된 문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상 처음으로 유럽연합 차원에서 공적 또는 그 진정함이 증명된 문서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성문화하였다: ‘진본 문서’란: (a) 진본 문서라고 공식적으로 작성되거나 등기된 문서로서, 그 문서의 진정성이 (i) 증서의 서명 및 내용과 관련이 있고 (ii) 공공당국이나 해당 문서가 유래한 회원국으로부터 해당 목적으로 권한을 부여 받은 기타 당국이 확정된 문서를 말한다(상기 규정의 제4조).

결론적으로, 현재 활동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 ① 공정증서는 그 내재적 특성 때문에 등기부대장의 진실하고 신뢰 가능한 기록을 대표하고 집행권원을 설정하는데 적합하고;
- ② 공정증서는 한 국가의 법률 및 경제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투자의 발전 및 안전을 촉진한다.

4.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이번 회의는 국제공증인대회가 열리는 대회의장에서 진행이 되었고, 대회의장에서는 주제 발표에 대한 각국의 토론이 이어졌으며, 특히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50여국에서 미리 준비한 코멘트를 주고 받는 등 매우 진지한 분위기였다. 다만 발표자들 대부분이 스페인어와 불어들을 구사하는 관계로 회의 내용 파악에 애로가 많았다(영어로

통역하는 통역인들의 수도 다른 회의에 비해서는 부족한 듯 보였다). 회의실 주변의 로비 복도 등에는 각국에서 온 공증인들이 자신들이 발표하는 리포트를 배포하거나 자국의 공증인협회에서 발간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하였다. 각국의 공증인들은 그 나라의 공증인제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공증인이라는 자격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 국제공증인대회를 하나의 축제로 생각하여 가족들을 동반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사무국에서도 동반자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두고 있었다.

5. 한국 참가자들의 활동

대한공증인협회의 업무를 알리는 영어판 홍보자료를 각국 공증인들에게 배포하였고, 국제공증인협회 사무국에서 준비한 자료와 각국에서 배포한 자료를 입수하였다. 공식 회의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일본 대표단과의 미팅, 차기신임 회장인 장 폴 드꼬르와의 개별적 면담 등을 가졌다.

V. 앞으로의 할 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실로 마침내 국제공증인협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회원국으로서 국제공증인협회의 여러가지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당면 현안 중의 하나는 아시아 지역위원회 창설과 관련하여 동 위원회의 회장 선임문제이다. 장기적으로는 국제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하여 특히 외국어 가운데 스페인어나 불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유능한 공증인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여 주기를 기대하여 본다. 